

의안번호	2208607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4. 17.
추 계 번호	25A1214

에너지급여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에너지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스템 구축·운영, 에너지 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5,355억원(연평균 5,071억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했으며, 관련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제정안의 에너지 급여로 대체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금액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215	223	232	240	250	1,160	232
에너지급여 지급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14	14	11	11	64	13
에너지 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	4,638	4,724	4,824	4,923	5,022	24,131	4,826
합 계	4,867	4,961	5,070	5,174	5,283	25,355	5,071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이며, 유사사례를 준용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수급품의 지급)	안 제2조제4호의 수급품 ¹⁾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함(제1항) 수급품의 지급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지역별 기준 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에너지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10조(신청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품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²⁾ 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음 1.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급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4	안 제11조(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제1항)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재산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16조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에너지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봄(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7조 (에너지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7	안 제19조(에너지급여의 부담)	에너지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 ³⁾ 에 따라 부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수급품의 지급)	×	국가가 수급자에게 수급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확대될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2	안 제8조(에너지급여의 분리 지급)	×	국가가 청년가구원에게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품을 지급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10조(신청조사)	○	—
4	안 제11조(확인조사)		
5	안 제16조(시범사업)	×	수급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움
6	안 제17조(에너지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	—
7	안 제19조(에너지급여의 부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⁴⁾
- 법 공포 후 6개월⁵⁾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2.5	2.9	3.2	3.9	3.8	3.8	3.8	3.8

5) 안 제1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안 제10조 및 제11조)

- 안 제10조 및 제11조의 비용추계 대상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실시를 위한 비용으로 하며, 유사성 높은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유사사례인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주택조사 관련 비용을 준용하되, 조사 건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조사 비용을 추계함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를 위한 조사 비용으로 조사원(현재 약 550명) 인건비 및 경상경비(차량사무실 임차료, 유류비, 공부발급비용 등) 비용에 대해 조사 전담기관인 LH에 국고보조금(보조율 100%)을 교부함
 - 주택급여 조사 비용은 대부분이 조사원 인건비로서 조사 건수에 주로 영향을 받음
 - 조사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계함
 - '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⁶⁾는 약 182.6만 가구로 '25년 예산은 30,652백만원이 편성됨
 - 에너지 급여 수급권자 지급 대상(중위소득 100분의 30 이하) 범위와 유사한 생계급여 지급 대상(중위소득 100분의 32 이하)인 약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급여 예산을 가구 수에 비례하여 추정한 결과, '25년 기준 20,81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됨
 - '26~'30년 조사비용은 '25년 기준 20,815백만원 명목임금상승률 적용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라 에너지 급여 지급을 위한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60억원으로 예상됨

6)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표 2]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215	223	232	240	250	1,160	2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에너지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안 제17조)

□ 추계 대상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유사사례인 주거급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함

○ 준용 사례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세대 주거급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 용역으로 '23년 총 6,205백만원이 소요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9~10억원의 비용 소요

○ 주거 급여 사례를 활용하여 가구 수에 비례한 에너지 급여 지급 업무 전산화 비용을 산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조사 건수에 주로 영향을 받으므로 차세대 주거급여 시스템 구축 비용을 가구 수를 고려하여 추정한 4,221백만원을 '26년~'28년으로 구축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시스템 구축 이후 매년 발생하는 운영관리 비용은 '24년 기준 9.5억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9년 11억원으로 추정

□ 제정안에 따라 에너지급여 지급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에너지급여 지급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에너지급여 지급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14	14	11	11	64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에너지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안 제19조)

- 추계 대상은 에너지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며,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세대당 지원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냉·난방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세대당 평균 36.7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는 [참고자료1]에 제시
 - '26년-'30년 세대당 지원단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⁷⁾
 -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지급 대상은 유사사례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지급 대상 가구 수로 가정하여 추계함
 - 에너지 급여 수급권자 지급 대상(중위소득 100분의 30 이하) 범위와 유사한 생계급여 지급 대상(중위소득 100분의 32 이하)인 약 124만 가구가 유지된다고 가정
- 제정안에 따라 에너지 급여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4,1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에너지 급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에너지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4,638	4,724	4,824	4,923	5,022	24,131	4,8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26년)37.4만원, ('27년) 38.1만원, ('28년)38.9만원, ('29년) 39.7만원, ('30년) 40.5만원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했으며, 관련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제정안의 에너지 급여로 대체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금액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sembly.go.kr

[참고자료]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목적) 냉·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제고
-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 *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예산) '25년 4,797억원
- (지원내용) 에너지(전·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지원단가) 세대당 평균 36.7만원(하절기 5.3, 동절기 31.4)
- (신청/사용기간) 5월~12월 / 夏 7월~9월, 冬 10월~차년도 5월

- 2022~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에너지바우처 (합계)	203,410	203,410 (192,264)	220,142	220,142 (220,047)	570,626	470,947 (282,568)
하절기 바우처	47,143	47,143 (44,301)	48,805	48,805 (48,710)	80,450	80,450 (69,148)
동절기 바우처	156,267	156,267 (147,963)	171,337	171,337 (171,337)	490,176	390,497 (213,420)

* '24년 사업은 동절기 지급 소요로 '25년 5월까지 지급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 실집행 중

-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25.3월 기준)	
	발급 대상 가구*	발급 가구	발급 대상 가구	발급 가구	발급 대상 가구	발급 가구
에너지 바우처	1,158,853	1,132,911	1,264,568	1,224,702	1,285,439	1,257,922

*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가구